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공업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불균일과세) 공업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 3 조(경감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3. (폐지조례)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업지구내에 진입하는 공장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